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17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 : 임오경 · 김홍걸 · 김용민

양기대 · 서영교 · 이상헌

김유덕 • 장철민 • 고용진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 이상의 사망자 등 300명이 넘는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하지 않고 당일 행사가 법적인 의미의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 부장관에게는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재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2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2를 제66조의13으로 하고, 제6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2(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6조의12(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인원 밀집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
	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
	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
	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